

# 「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」

## 일부개정안

### 1. 개정이유

공항 주변 장애물 관리에 대한 공항시설법령이 개정(시행 2023. 10. 19.)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및 용어 신설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별지 1)
- 나. 관련 행정규칙 내용 반영(안 별표 7)
- 다. 자구 수정 및 문구 정리 등 미비점 보완(안 제3조, 제8조 등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항시설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호 중 “제1항 제1호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, “협의과정”을 “설치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47조의 규정”을 “제4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제한”을 “설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규칙 28”을 “규칙 제28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국제민간항공협약”을 “국제민간항공조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2호 중 “협의장애물”을 “장애물”로 한다.

2. “타워크레인”이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(jib)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,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.

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6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항항시설”을 “항공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

중 “항공장애물”을 “장애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가능“, “설치 불가”를 “가능” 또는 “설치 불가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제21조”를 “제17조”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“(재검토 기한)”을 “(재검토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국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2023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별표 7 제1호 기호(□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빈도 범주	빈도 구분	판정 기준 (2백만 비행시간으로 환산)
5	매우 높음	1일 이내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상
4	높음	2주 이내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상
3	보통	3월 이내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상
2	낮음	1년 이내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상
1	아주 낮음	5년 이내 발생가능성 거의 희박

별표 7 제1호 기호(□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결과 범주	상해 또는 사망	자연/공공의 혼란	재정상의 영향	환경상의 영향
A	사망 발생	매우 심각	10억원 이상	회복 불가
B	중상 발생 (전치 4주 이상)	심각	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	회복 비용 많이 소요
C	경상 발생 (전치 2주 이상 4 주 미만)	보통	1000만원 미만	회복 가능
D	경상 발생 (전치 2주 미만)	낮음	경미한 손실	극미함
E	없음	최소	없음	없음

별표 7 제1호 기호(□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결과				
		A	B	C	D	E
빈도	5	수용 불가	수용 불가	수용 불가	수용 불가	수용
	4	수용 불가	수용 불가	수용 불가	재검토	수용
	3	수용 불가	수용 불가	재검토	위험관리 필요	수용
	4	수용불가	재검토	위험관리 필요	수용	수용
	1	재검토	위험관리 필요	수용	수용	수용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제2호”를 “제5호, 같은 법 제35조(항공학적 검토위원회) 제6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“(예시) 위험 없음, 위험 있음””을 ““○○○”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3장(비행안전 확인)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(공항시설의 신설·증설·정비 또는 개량 등) 시행과정이나,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항주변 장애물 <u>협의과정</u>에서의 비행안전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정함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제5장(레이저광선)은 법 제34조 및 제56조, 규칙 제22조 및 <u>제47조의 규정</u>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레이저광선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</p> <p>제2조(적용 범위)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3장(비행안전 확인)은 다음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항제2호</u>----- ----- <u>설치과정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제47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적용 범위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

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.

가. (생략)

나. 규칙 제22조(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의) 제1항에 따른 장애물(이하 “협의장애물”이라 한다)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

3. 제4장(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)은 법 제36조(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), 규칙 28조(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대상 구조물 등) 및 제29조(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·변경·철거 신고 및 관리)에 따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4. (생략)

제3조(준용 규정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1.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(이
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설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규칙 제28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준용 규정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국제민간항공조약 -----

하 “ICAO 부속서”라 한다) 14  
(비행장)

2. 3. (생략)

5. ~ 7. (생략)

제4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
2. “건설크레인”이란 짐을 끌어 올리는 기능과 그것에 수평이동을 더한 기능을 가진 하역·운반기계로서 이동식, 고정식, 상승식 및 T형과 L형을 말한다.

3. ~ 21. (생략)

22. “비행안전 확인”이란 규칙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, 협의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.

23. ~ 47. (생략)

제8조(심의·의결 기준) ① (생략)

-----  
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~ 6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

제4조(정의) 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“타워크레인”이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(jib)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,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.

3. ~ 21. (현행과 같음)

2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 장애물-----  
-----.

23. ~ 47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심의·의결 기준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16조(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 절차) 증명 공항의 공항개발 사업(공항시설의 신설·증설·정비 또는 개량 등) 과정에서 기준미달시설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

가.·나. (생략)

나. (생략)

2.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

가. ~ 마. (생략)

사.·아. (생략)

제18조(장애물 심사위원회) ① 장애물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에 장애물 심사위원회를 두며, 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·부산지방항공청은 공항시설과장, 제주지방항공청은 항행시설과 담당 계장이 간사가 된다.

②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

제16조(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 절차)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1. -----

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2. -----

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·사. (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)

제18조(장애물 심사위원회) ① 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항공시설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

-----



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2. (생략)

3. 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공항시설·운영 또는 항공장애 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

4. (생략)

③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장애물의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 결과를 “설치 가능“, “설치 불가”로 의결한다.

제19조(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사전검토) ① (생략)

③ (생략)

제23조(협의장애물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) ① (생략)

② 협의장애물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은 제21조를 준용하여 시행한다.

제53조(재검토 기한) 국국토교통 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장애물 -----  
-----  
-----  
--

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가능” 또는  
“설치 불가”-----.

제19조(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사전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3조(협의장애물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제17조 -----  
-----.

제5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 관-----

-- 2024년 1월 1일 -----

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